

서울특별시의회
제332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9. 9.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927호
2. 발 의 자 : 최유희 의원
3. 발의일자 : 2025. 8. 11.
4. 회부일자 : 2025. 8. 14.

II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」 제16조제1항에 따라, 일반 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66㎡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하나,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44㎡ 이상의 교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.
- 그러나 현행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나 예외 규정이 없어, 학교 현장에서 시행령의 취지를 반영한 유연한 특수학급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.
- 서울 관내 학교의 특수학급 수용 여건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,

교실 면적 부족은 특수학급 확충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66 m^2 이상 교실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44 m^2 이상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III. 주요내용

1. 66 m^2 이상의 여유 교실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, 44 m^2 이상의 교실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함(안 제5조 제3항 신설).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」
2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3. 기 타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

○ 입법예고(2025. 8. 20. ~ 8. 24.) 결과 : 의견 없음.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11일 최윤희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2927호로 발의되어 2025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」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시 최소 면적을 66㎡로 하되 해당 학교에 66㎡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면적기준을 44㎡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」을 근거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시 “해당 학교에 66㎡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”에는 교실당 66㎡ 이상인 면적 기준을 44㎡ 이상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「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」 제16조제1항은¹⁾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면적을 교실당 66㎡ 이상으로 하고, 시·도 조례에서 학교 여건과 특수교육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44㎡ 이상까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

1)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」 제16조(통합교육을 위한 시설·설비 등)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, 세면장·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.

합니다.

- 이에 안 제5조제3항은 해당 시행령을 근거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시 “해당 학교에 66㎡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”에는 교실당 66㎡ 이상인 면적 기준을 44㎡ 이상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- 동 조문은 기존 교사(校舍)의 공간적 제약으로 특수학급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특수학급 확대에 이바지하고, 궁극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법적 조치로 생각됩니다.
- 특히, 「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」 제21조는²⁾ 교육감에게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시책(통합교육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, 해당 조문의 신설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신설 기준 완화를 통해 통합교육의 현장 안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덧붙여 안 제5조제3항은 특수학급 신설을 위한 최소 교실 면적을 사립유치원의 보통학급 신설 기준과³⁾ 동일한 수준까지 낮춤으로써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를 보다 원활하게 도모할 수 있는 효과도

2)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1조(통합교육)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, 교육과정의 조정,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, 교구·학습보조기·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·운영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설비 및 교재·교구를 갖추어야 한다.

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.

3)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(2023.9.)의 「사립유치원 인가 업무 처리 기준」에 따르면,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인가 시 보통교실 기준 면적은 “원아 1인당 면적 2.2㎡ 이상을 확보”하도록 하고, “학급 수는 44㎡ 이상을 충족(3세반 20명 정원 기준)하는 보통 교실의 수로 인가”하도록 정하고 있음.

(자료 :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(2023.9.), 「사립유치원 인가 업무 처리 기준」, 16쪽.)

기대됩니다.

- 한편, 동 조문은 서울시 내 일반학교 968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1,679개 중 사립학교에서 운영되는 특수학급이 23교의 53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사립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[표-1] 2025학년도 관내 학교급·설립유형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현황⁴⁾

(단위 : 교, 개, 명, 2025.4.1. 기준)

학교급	특수학교 운영 학교 수			특수학급수			정원 합계		
	국공립	사립	소계	국공립	사립	전체	국공립	사립	전체
유치원	139	-	139	153	-	153	612	-	612
초등학교	501	-	501	883	-	883	5,298	-	5,298
중학교	219	2	221	341	3	344	2,046	18	2,064
고등학교	86	21	107	249	50	299	1,743	350	2,093
합계	945	23	968	1,626	53	1,679	9,699	368	10,067

- 관내 사립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는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한 곳도 없고, 중학교는 전체의 1.8%인 2교, 고등학교는 전체의 10.5%인 21교에 불과합니다.⁵⁾
- 또한,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사립 일반학교 324교 중 55교가 이미 1실 이상의 일반교실을 44㎡ 이상 66㎡ 미만인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126교는 44㎡ 이상 66㎡ 미만인 공간을 일반 교실이나 교과교실, 특별교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⁶⁾
- 이런 상황에서 안 제5조제3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요구에도 공간 부족으로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운 학교에 기준 면적 완화를 통해 특수학급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-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“해당 학교에 66㎡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

4) (특수교육과) 시의원(박상혁의원) 요구자료 제출(1709번) (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-8202, 2025.8.19.)를 분석, 정리함.

5) 전체 사립학교 수(초등학교 38교, 중학교 109교, 고등학교 200교)는 「2024년 유초중등 교육통계」를 기준으로 함.

6) 시의원(박상혁 의원) 요구자료 제출(1703번) (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-9335, 2025.8.19.) 자료를 분석, 정리한 것임.

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”에 대한 세부적 기준까지 마련하고 있지 않느냐, 동 규정안의 적용 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에 관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(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-10439, 2025.8.20.)⁷⁾

□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의안심사지원팀장	정진국(2180-8263)	입법조사관	김지수(2180-8264)
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

7)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(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-10439, 2025.8.20.)

관계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
[시행 2025. 6. 21.] [법률 제20565호, 2024. 12. 20., 일부개정]

- 제21조(통합교육)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, 교육과정의 조정,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, 교구·학습보조기·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·운영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설비 및 교재·교구를 갖추어야 한다.
-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.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

[시행 2025. 2. 28.] [대통령령 제35284호, 2025. 2. 25., 일부개정]

- 제16조(통합교육을 위한 시설·설비 등)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, 세면장·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, 연령, 장애의 유형·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,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·대체기구 등의 교재·교구를 갖추어야 한다.
-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1.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
 2.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
 3.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
 4.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